

추첨제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

■ 추첨제 당첨자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구비서류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도장 인감증명서	본인	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	○		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 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 등본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○	가족관계 증명서	본인	단독세대 및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
		○	출입국사실 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
대리		○	인감도장	계약자	
		○	인감증명서	계약자	
		○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12.2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 ※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